

위임장					
수임인 (대리인)	성명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 2(어음·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다는 취지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단,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승낙함.)					
액면	금	원정		수취인	
발행일		지급기일		발행인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인감 ㉠	성명	
	주소			주소	
위임인	성명		인감 ㉠	성명	
	주소			주소	

첨부서류 : 3개월이내 위임인 인감증명서 각자 1통



약속어음			
귀중	주소		
원정	발행인		인감 ㉠
₩	주소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발행인		인감 ㉠
발행일 : 년 월 일	주소		
지급기일 :	발행인		인감 ㉠
발행지 :	주소		
지급지 :	발행인		인감 ㉠
지급장소 :	주소		